

##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김 대 희\*  
Dae-Hee Kim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국내 스포츠분쟁해결제도 현황 분석
  - III. 해외 스포츠분쟁해결기구 현황
  - IV.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 설치 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스포츠분쟁해결기구, 스포츠분쟁, 중재, 스포츠중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 법학박사, 한국체육과학연구원/광운대학교 · 국립한경대학교 외래강사.

##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개최는 또 다시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포츠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스포츠 정신과 공정성이란 근본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선수 폭력, 승부 조작, 오심, 불공정 계약,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파벌에 의한 선수선발, 입시비리 등의 공정하지 못한 운영시스템과 비리가 스포츠의 근간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으로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포츠의 특성과 가능한 한 스포츠 영역의 자율성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2006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나, 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2009년 12월 해체되었다.<sup>2)</sup>

2009년 이후 스포츠의 위상과 스포츠관련 산업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고, 이와함께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스포츠선진국에서처럼 스포츠분쟁, 선수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한 전문적인 분쟁해결기구가 없다는 것은 스포츠강국으로서의 면모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sup>3)</sup>

이 글에서는 2009년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해체 이후의 국내 스포츠분쟁해결 제도 현황 분석 및 해외의 스포츠분쟁해결 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증가해 가는 스포츠분쟁에 대한 법적인식에 따른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대책’ 및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스포츠공정위원회’출범과 2013년 12월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문대성의원 발의)에 의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인 설립안

- 1) 노태강,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및 경기운영시스템 인증제 시행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및 경기운영시스템인증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에리사 의원실, 2013. 4., p.14.
- 2)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2006년 5월,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하여 대한체육회 산하 독립적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중재실적 1건으로 중재 실적 미비(경기단체 중재 거부), 사무국 별도 운영의 비효율성, 대한체육회 상벌위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2009년 12월 해체되었다.
- 3) 이에 대한 상세는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스포츠동지』, 2010. 5.26.자, 접속일 2014. 1.29, <http://www.sportnest.kr/567>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스포츠의 특성과 스포츠영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설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국내 스포츠분쟁해결제도 현황 분석

###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은 체육진흥 장·단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국가대표선수 육성·지원 등을 통한 전문체육 진흥, 생활체육/레저스포츠/스포츠산업 진흥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국제체육교류 진흥,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 장애인의 체육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중추이다.<sup>4)</sup>

최근 경기조작 파문 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sup>5)</sup>

이 종합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및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2012년 2월 확정·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는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방안,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방안

승부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다.

첫째,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는 한편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암행감찰제도(Supervisor)’의 도입 등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mcst.go.kr>

5)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2. 2.21.자, 접속일 2014. 1.29, <http://www.mcst.go.kr>

을 통해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지도자 등이 신분 불안 없이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 2)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실시 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위 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방안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 2.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특수법인이자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한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를 육성하고 경기단체를 지도·감독한다.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이다.<sup>6)</sup>

대한체육회에서는 체육계의 각종 비리 근절 및 예방,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선수의 권익 보호, 규정 준수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하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 1) 클린스포츠 TF

클린스포츠 TF팀은 2011년 11월18일 대한체육회 제17차 이사회에서 체육계의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스포츠 TF’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무총장 직속의 ‘클린스포츠 TF’팀은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구성하여 승부조작·납품비리 등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 2) 스포츠인권익센터<sup>7)</sup>

스포츠인권포털은 대한체육회 주관 하에 스포츠인의 인권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포츠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기타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의 신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을 통한 신고·상담·사후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교육,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대상자별 지침서),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정보(법률, 규정, 정책, 뉴스, 자료), 스포츠인권 관련 성공사례 및 의견 나눔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도별 연합교육 및 각 시도별로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전문가와 함께 스포츠인권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의 문제와 학습권 침해 등과 같이 학생선수들이 선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3) 선수위원회<sup>8)</sup>

선수위원회는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선수위원회는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선수 권익

6) 대한체육회 현재 국내 58개 체육단체가 가맹하고 있으며, 프로를 제외한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통합 기관으로, 이미 법제상별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1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sports.or.kr/koc.sport>

7)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sports-in.sports.or.kr/index.jsp>

8)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sports.or.kr/koc.sport>

침해(선수 폭력·성폭력 행위)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선수 등록 업무 및 선수 등록 규정, 은퇴 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 4) 법제상벌위원회<sup>9)</sup>

법제상벌위원회는 체육회 각종 규정 총괄 조정 및 관리, 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 자문에 응하고 있다.

법제상벌위원의 역할(기능)은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표창에 관한 사항, 징계에 관한 사항,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 3.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sup>10)</sup>에서는 최근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성행 등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공정업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와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 스포츠 환경조성 대책(2012년 2월)의 일환으로 불법스포츠 도박근절과 부정경기방지를 위한 ‘클린 스포츠 통합콜센터’개소하였다.<sup>11)</sup>

주요업무로는 스포츠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전문심리상담제도 운영을 통해 선수 및 감독 등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비리행위(경기조작 등)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고발자 및 외부 협박 피해자 등을 위한 신고상담 전담창구를 신설, 불법사이트 도메인 신고, 불법사이트 운영자 신고, 불법사이트 이용자 신고, 구매한도 초과판매 신고, 승부조작 관련신고, 청소년판매 신고, 구매제한자 투표권구매 신고, 기타 부정행위 신고 등의 업무 등이 있다.

### 4. 체육인재육성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sup>12)</sup>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선진화를 주도할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육성하고 인성 함양 및 지도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 ·

9)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sports.or.kr/koc.sport>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989년 4월 20일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kspo.or.kr/?menuno=316>  
 11) 클린스포츠센터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cleansports.or.kr>  
 12) 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07년 문화부 법인설립 승인으로 설립된 체육인력을 양성하는 인재육성 전문기관이다; 체육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nest.or.kr>

과학적 지도방법 습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스포츠맨십 교육, 부패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 코칭 윤리와 선수 인권 교육, 도핑방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sup>13)</sup>

## 5.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를 진행하며 도핑검사에 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하고 있다.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를 하고 있으며 도핑방지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치료목적을 위한 예외적 방법 및 사용 허용기준의 수립과 그 시행, 그 밖에 도핑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청문회 및 제재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하고 제재결정 내용은 선수와 해당 경기연맹 및 체육회에 전달된다. 선수가 제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수는 항소위원회 혹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sup>14)</sup>

## 6. 스포츠공정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4년 2월 3일 출범한 ‘스포츠 4대 약 신고센터(1899-7675)’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15)</sup>

주요업무로는 ‘스포츠 4대 약 신고센터’의 제보 사례,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등 각 체육단체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문제 사례 등 각종 공정성 훼손 사례들을 검토하고, 상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거나 체육단체 등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조직 사유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 공정성 및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

13) 체육인체육성재단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nest.or.kr>

14)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29, [http://www.kada-ad.or.kr/renew/?sub\\_num=131](http://www.kada-ad.or.kr/renew/?sub_num=131)

1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비정상 관행 정상화 노력의 제도화 ‘스포츠공정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4. 2.11., p.1.

## 7. 프로스포츠 연맹

국내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는 각 연맹별 상벌위원회와 연봉조정위원회를 각 규약에 의하여 두고 있다.

상벌위원회의 경우 감독,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및 오심에 대한 징계를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재를 하고 있으며, 연봉조정위원회의 경우 각 규약별로 연봉조정신청제도에 따라 선수가 연봉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연봉조정을 실시한다.<sup>16)</sup>

가장 인기 있는 프로야구의 경우 올해는 연봉조정신청이 없었다. 이는 구단과 선수가 최대한 빨리 협상하여 원만하게 계약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굳이 연봉조정신청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연봉조정신청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연봉조정신청이 총 96차례 있었다. 이 중 76차례는 중도계약 타결로 자동 취소되었고,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20차례에 불과하다. 20차례 중 구단측 승리가 19차례였고, 선수측 승리가 단 1차례에 불과하다.<sup>17)</sup> 이러한 결과는 연봉조정신청이라는 제도가 무색해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 8. 시사점

앞에서 국내 스포츠분쟁해결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엄밀히 따지면 스포츠분쟁해결제도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스포츠 분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스포츠는 국가 차원에서도 독립된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20세기 들어 스포츠의 선전효과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sup>18)</sup> 이에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스포츠분쟁<sup>19)</sup>을 사

16) 한국야구위원회의 경우 연봉조정신청(salary arbitration)은 KBO한국야구위원회소속선수로서 만 3년이 경과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KBO에서는 부상자 명단으로 1군 엔트리 누락시 포함되지 않음) KBO 야구규약 제73조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0일 오후6시까지 총재가 수리하여 야구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 수리된 신청 건에 대하여 조정신청 수리 후 1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절차는 선수와 소속 구단이 연봉조정을 신청 후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조건 중 1가지를 택하게 된다. 선수 및 구단은 조정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후인 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연봉 산출근거 자료 KBO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를 제출한 쪽에게 패한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구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수의 보류권을 상실하고 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풀린다. 반대로 선수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의탈퇴로 처리된다; 한국야구위원회 2013 야구규약 참조.

17) 2002년 LG트윈스의 유지현만이 연봉조정위원회에서 선수 측 승리 판정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산술적인 결과만 보더라도 연봉조정신청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18)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p.16.

19) 스포츠 분쟁의 유형 및 사례에 관하여는 채우석, “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제12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2, pp. 173-177.참조.;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



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각 스포츠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상벌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포츠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한 스포츠환경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육성재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각 프로스포츠연맹 등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 분쟁은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체육계는 스스로의 해결 수단은 아직 전근대적인 징벌수단에 의한 해결만을 도모해 왔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sup>20)</sup>

이러한 스포츠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스포츠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과 스포츠 단체의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통합적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스포츠 윤리 확립과 스포츠인의 권리보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스포츠 비리의 차단과 분쟁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자치기구의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sup>21)</sup>

해외 사례의 경우도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스포츠 윤리진담 기관과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해외 유사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Ⅲ. 해외 스포츠분쟁해결기구 현황

#### 1.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 ICAS) 및 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국제기구로서 스포츠중재재판소가 198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로 탄생했다.<sup>22)</sup>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상거래계약, 프로젝트약이나 초상권에 관련되는 문제 등을 취급하는 i) 일반 중재부(Ordinary Arbitration Division), 스포츠 단체의 결정에 대해서 경기자 혹은 경

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2., pp. 74-82. 참조.

20) 이에 대한 상세는 양병희, “한국 스포츠분쟁 ADR의 현황과 전망”, 『스포츠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자료집』,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22회 학술대회, 2007. 12., p. 17. 이하 참조.

21) 김상겸, “스포츠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제13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5., p. 205.

22)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당시 IOC위원장이인 사마란치의 지시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있던 전 IOC 부위원장 을 역임하였던 게바 무바이에(IOC 명예위원, 세네갈 대법원명예장관역임)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채우석, 앞의 논문, p.179.

기단체가 제소하는 경우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ii) 항소 중재부(Appeals Arbitration Division), 올림픽이나 영영방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축구대회 등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는 iii)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 of the CAS)로 구성된다.<sup>23)</sup>

중재유형은 상업적 분쟁으로 스폰서십, TV중계권, 국제대회개최, 선수이적, 고용계약, 에이전시 계약, 경기중 부상사고 책임 등이며, 징계 관련으로는 도핑, 선수 폭력, 심판권 남용 등이 있다.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최종 판단이 되며 다만,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 공정한 청문을 받을 권리 위반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스위스연방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sup>24)</sup>

1994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중립성을 위하여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를 창설하였다.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스포츠분야의 분쟁해결을 촉진할 목적으로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당사자 권리보호와 절대적인 독립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를 창설한 것이다.

## 2. 캐나다(Sports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

캐나다는 독립된 분쟁해결기구인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SDRCC)라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크게 분쟁예방센터와 재판소로 구별된다. 분쟁예방센터에서는 교육, 출판, 표준계약서 제공, 법률 자문 및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판소는 소통, 조정, 중재 세가지 분쟁해결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통 외에 중재와 조정은 신청비를 일부 받고 있다.<sup>25)</sup>

분쟁조정은 체육단체 내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시되며, 조정의 결정은 조정·합의와 중재결정은 각각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분쟁조절절차는 신청 → 사례 검토 → 해결 촉진 → 회의 또는 청문회 →

23) 이재경,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법률신문』, 2008. 9.29.자, 접속일 2014. 1.29,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m=pnnyn&serial=1863>

24) 스포츠중재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tas-cas.org/statutes>

25) 분쟁해결방식은 조정제도(Mediation)와 중재제도(Arbitration), 조정과 중재의 결합제도(Mediation/Arbitration)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는 다음과 같다: Sports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crdsc-sdrcc.ca/eng/about.jsp>

조정제도 (Mediation)	· 당사자의 자의에 의한 합의, 법정 싸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 · 다만, 양 당사자의 타협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효율성이 희박함
중재제도 (Arbitration)	· 결정에 대한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한 방식, 조정제도보다 더 구조화되고 형식적인 측면, 확실성 제공 · 다만, 조정이 아니므로 양쪽 당사자의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 당사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어려움, 대부분의 분쟁의 경우에 이상적인 상황은 아님
조정과 중재의 결합제도 (Mediation/Arbitration)	· 조정을 통해 해결하다가 어려운 경우 중재로 나아가는 제도,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

계약 또는 결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제도(변호사 및 Pro Bono<sup>26)</sup> 시스템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sup>27)</sup>

### 3. 뉴질랜드(Sport Tribunal of New Zealand)

뉴질랜드의 경우 'Sport Tribunal of New Zealand'라는 뉴질랜드스포츠재판소(법원)를 2003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스포츠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총 132건을 재판을 통하여 결정하였다.<sup>28)</sup>

재판은 체육단체 내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개시되며, 도핑의 경우는 즉시 제소할 수 있다. 비용은 도핑사건의 경우 무료이며, 체육단체 사건은 500\$(NZD), 합의·중재 사건은 각 250\$(NZD)이다.<sup>29)</sup>

조정제도(Mediation)와 청문제도를 두어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며 조정제도의 경우 캐나다의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 청문제도(Hearing)는 사전에 청문회를 실시한 후 재판에 의한 해결을 하고 있다. 재판절차는 절차의 정보 제공 및 서류의 제출 → 사전 심리 절차 → 청문회 → 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sup>30)</sup>

### 4. 영국(Sport Resolutions)

영국의 경우 'Sport Resolutions'라는 독립적인 비영리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다. UK Sport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사회 15명 및 도핑, 아동보호, 공정, 선수선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 중재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는 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SDRP)를 별도로 두고 있다.<sup>(31)</sup>

Sport Resolutions의 주요 업무는 조정, 중재, 패널 지명 및 약속, 조사 및 검토, 자문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분쟁 해결 조항, 심리·조정·중재 및 비디오 회의를 위해 회의실 대여 등이 있다. 조정과 중재의 절차는 캐나다 및 뉴질랜드의 경우와 동일하다.

26) 프로 보노(라틴어: pro bono)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형사사건을 말한다. 라틴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 (pro bono publico)'의 약어이다: Wikipedia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en.wikipedia.org/wiki/Pro\\_bono](http://en.wikipedia.org/wiki/Pro_bono)

27) Sports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crdsc-sdrcc.ca/eng/about.jsp>

28) Sports Tribunal Annual Report 2012/13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sporttribunal.org.nz/Global/Annual%20Reports/Sports\\_Tribunal\\_%20Annual\\_Report\\_13.pdf](http://www.sporttribunal.org.nz/Global/Annual%20Reports/Sports_Tribunal_%20Annual_Report_13.pdf).

29) Rules of the Sports Tribunal of New Zealand 2012, Part A, Rule 29(Costs) - General Provisions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sporttribunal.org.nz/Global/Rules%20and%20Forms/Rules\\_sports\\_tribunal\\_2012.pdf](http://www.sporttribunal.org.nz/Global/Rules%20and%20Forms/Rules_sports_tribunal_2012.pdf).

30) Rules of the Sports Tribunal of New Zealand 2012, Part A - General Provisions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sporttribunal.org.nz/Global/Rules%20and%20Forms/Rules\\_sports\\_tribunal\\_2012.pdf](http://www.sporttribunal.org.nz/Global/Rules%20and%20Forms/Rules_sports_tribunal_2012.pdf).

31) Sport Resolutions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sportresolutions.co.uk>

국가반도핑위원회(National Anti-Doping Panel), 국가보호위원회(National Safeguarding Panel), 프로보노 법률상담(Pro Bono Legal Advice & Representation) 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 5. 일본(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1999년 12월 일본올림픽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중재연구회’가 설치되어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스포츠중재 혹은 일본상사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 등을 참고하여 스포츠중재규칙을 작성하기도 하였다.<sup>32)</sup>

이후 2002년 8월에는 스포츠중재연구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올림픽위원회·일본체육협회·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의 위원들이 포함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창설준비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2003년 4월 7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일본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었고, ‘스포츠중재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sup>33)</sup> 다시 2009년에는 일반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3년에는 공익 재단법인으로 인정되었다.<sup>34)</sup>

2004년 9월부터 ‘특정중재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정중재합의에 기초한 스포츠중재규칙’은 스포츠중재규칙의 중재대상으로 하는 분쟁 이외에 스포츠분쟁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주로 스포츠산업분쟁을 중재대상으로 삼아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스포츠중재규칙, 도핑 분쟁에 대한 스포츠 중재규칙, 가맹단체 스포츠중재규칙, 일본여자 프로 골프협회 도핑 분쟁 중재규칙 등이 제정되어 있다.<sup>35)</sup>

스포츠 조정(화해·알선)에 대하여도 그에 대한 절차는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아, 조정에 대한 규칙도 중재와 같이 ‘특정 중재 합의된 조정(화해·알선)규칙’을 제정(2013년 5월 21일 개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재 조항 채택여부는 일본 올림픽위원회, 일본체육협회,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등은 모두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으며, 산하 각 경기단체들도 중재 조항을 선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36)</sup>

32) 이에 대한 상세는 채우석, 앞의 논문, p.185. 이하 참조.

33) 채우석, 위의 논문, p.186.

34) 公益財団法人 日本スポーツ仲裁機構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jsaa.jp/doc/gaiyou.html>

35) 公益財団法人 日本スポーツ仲裁機構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jsaa.jp/doc/gaiyou.html>

36) 公益財団法人 日本スポーツ仲裁機構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www.jsaa.jp/doc/gaiyou.html>

〈표 1〉 스포츠 중재 자동 승낙 조항의 채택 현황(2014년 1월 9일 현재)

	채택	미채택	검토중	무응답	합계	채택율 (%)
JOC · 일본체육협회 · 일본 장애인스포츠협회	3	0	0	0	3	100
JOC 가맹 · 준 가맹 단체	37	8	14	1	60	61.2
일본체육협회 가맹 · 준가맹 단체	6	4	1	6	17	35.3
소계	46	12	15	7	80	57.5
시도 체육협회	8	28	10	1	47	17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가맹 · 준 가맹 단체	12	9	35	13	69	17.4
합계	66	49	60	21	196	33.7

출처: 공익재단법인 일본스포츠중재기구 홈페이지.

#### 6. 미국(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스포츠 강국인 미국의 경우, 모든 스포츠 관련 분쟁은 법정이 아닌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AA)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소송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민간의 비영리 단체이며, 그 대상은 상사, 보험, 노사분쟁 등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sup>37)</sup>

미국의 ‘아마추어 스포츠법’ (The Amateur Sports Act) 에서는 ‘모든 스포츠 분쟁은 재판이 아닌 중재로 해결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선수와 협회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협회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중재 합의에 임하게 하고 미국중재협회의 중재판정에 따르게 함으로써, 재판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무엇보다 선수 입장에서 재판을 하지 못해 협회로부터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sup>38)</sup>

미국중재협회는 스포츠와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받고 있다.<sup>39)</sup>

37)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참조, 접속일 2014. 1.31, <https://www.adr.org/aaa/faces/home>

38) 미국중재협회의 스포츠 중재제도에 관한 상서는 김성룡 · 안건형, 앞의 논문, p. 89.이하 참조.

39)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또한 창립 초기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하위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 7. 시사점

〈표 2〉 해외 스포츠분쟁해결기구 현황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기구명	Sport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 (SDRCC)	Sport Tribunal of New Zealand	Sport Resolutions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JSAA)
결정기구	이사회 13명 중재·조정위원 46명	① 중재위원 9명 (위원장: 전 판사, 법조인 2 ↑, 체육인) ② 중재 시 : 3명이상	① 이사회 15명 (이사장1, 체육계 10, 사무국장 1) ② 중재위원 - 도핑, 아동보호, 공정, 선수선발, 상업 등	① 평의회 7명 ② 이사회 12명 ③ 중재위원 88명 (중재 3명 or 1명)
사무국	5명	미확인	4명	1명 + 파트타임
기능	분쟁예방센터 : 교육, DB 제공, 출판, 표준계약서, 법률자문, 상담전화 운영 분쟁해결(재판소) : 소통, 조정, 중재 도핑포함	① 분쟁조정 - 조정, 중재 * 도핑 포함 pro bono	① 교육훈련(유료) ② 분쟁조정(도핑) ③ 전문가 추천 *London pro bono	① 분쟁조정 - 중재, 조정 ② 세미나, 교육 활동 등 * 도핑 포함
법적근거	Bill C-12 (Act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and sport)	Sports Anti-Doping Act 206	* UK Sport 재정지원	스포츠중재규칙 제정
결정효력	최종 (조정합의, 중재결정)	최종 (일부CAS제소)	-	-
설립시기(연혁)	'04. 4월 '00. 5 워킹그룹 '01. 8 실행위원회 '03. 3 Bill C-12 개정	'03 '07.7월 (법정법인화)	-	'03. 4 '09. 4 (재단법인화)
개입시기	체육단체 내 절차 완료시	도핑 : 즉시 기타 : 체육단체 내 절차 완료시	① 체육단체 규정에 명시 ② 표준계약서에 명시 ③ 합의	preferential
비용	소통 : 무료 조정, 중재 : 신청비 250\$	도핑 : 무료 체육단체건: 500\$(NZD) 합의 중재: 각 250\$(NZD)	계약	중재신청 : 5만엔
규모		2003년~2012년까지 132건	250건 (3/4 전문체육, 1/4 생활체육)	10년간 17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해결기구의 사례는 스포츠중재재판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독립적인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스포츠선진국이다.<sup>40)</sup> 또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sup>41)</sup>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포츠자치권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분쟁해결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일본,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국내에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sup>42)</sup>

해외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분쟁해결기구의 독립적인 설치를 통하여 체육단체 자체 징계 및 분쟁 절차 완료 후 독립된 스포츠중재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의 재심을 통하여 분쟁 해결의 윤리성·공정성을 제고하여 체육단체 내 분쟁해결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법률상 화해나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는 중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한 스포츠분쟁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 있다.

## IV. 국내 스포츠분쟁해결기구 설치방안

### 1.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으로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이나 소속 공공기관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법정법인화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행정기관

40) 스포츠선진국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경제지표 등 수치화된 데이터(data)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계에서는 하·동계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순위 및 각 국가의 체육환경(체육관련 정책이나 법제도, 정부의 지원 규모,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선진국이라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41)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스포츠동지』, 2010. 5.26.자, 접속일 2014. 1.29, <http://www.sportnest.kr/567>

42)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스포츠동지』, 2010. 5.26.자, 접속일 2014. 1.29, <http://www.sportnest.kr/567>

자체에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행정기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다.<sup>43)</sup>

행정기관 자체에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및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정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정부 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스포츠분쟁에 대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스포츠 자율성이 저해되는 점과 정부 조직 및 정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정법인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정부조직과 유사하게 조직, 정원,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으나, 독립기구로 설치함으로써 스포츠단체를 모두 포괄할 수 있으면서도 스포츠분야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44)</sup>

2013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문대성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2014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일환으로,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 관리,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정부 정책이 정부조직 또는 공공기관으로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45)</sup>

## 2. 체육단체 내 설치

대한체육회 등 스포츠단체 내 설치할 경우 설치의 용이성,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장점은 있으나, 기존 윤리 기능과 제재 기능과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은 미미할 것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외 프로단체, 생활체육단체 등 스포츠단체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sup>46)</sup>

다만, 그 대안으로는 대한체육회의 법제상벌위원회와 스포인권익센터를 기존대로 운영하고, 선수계약 및 스포츠산업 관련한 민·상사관련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구를 신설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의 내부 위원회에 스포츠분쟁조정위원회를

43) 이를 행정형 ADR기구라 한다. 행정형 ADR에 관한 상세는 임동진, “행정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7권 제3호, 2013. 가을호, pp.129-155. 참조.

44) 노태강, 앞의 자료집, p.19

45)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능 중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하기 위한 중재위원이나 인프라가 현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아직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나 관련 법률 개정 등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다.

46) 노태강, 앞의 자료집, p.19



설치하여 스포츠관련 모든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체육단체 정관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명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수 계약 및 스포츠산업 관련한 민·상사관련 분쟁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 운영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sup>47)</sup>

### 3. 민간 독립기구 설치

스포츠분쟁해결기구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은 스포츠 전 분야를 포괄하며 스포츠자율권을 확보한다는 점과 가장 중립적인 형태라는 장점이 있으나 순수 민간기구 설립을 위한 스포츠단체간의 합의의 어려움과 안정적 재원의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자율규제의 경우 그 수준이 스포츠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강력한 분쟁해결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 대안으로 미국의 경우처럼 선수와 협회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협회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중재 합의에 임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화예술인표준약관에 따라 분쟁해결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대외비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sup>48)</sup>

스포츠분야에서도 체육단체 정관과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통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013년 12월 정부의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에 따라 ‘스포츠대리인제도’의 도입이 가시화 되었다.<sup>49)</sup> 스포츠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면 표준계약서 사용과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전문 민간 독립기구 설치한다면 스포츠와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정성을 보장받으며, 전문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47)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 지정된 유일한 중재기관이며, 중재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중재법 제35조)하다.

48) 현재 연예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는 총 6종의 표준계약서(전속계약서(배우, 가수), 방송출연계약서, 영화출연계약서 등)가 있으며, 전속표준약관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49) 문화체육관광부, “IT를 접목한 스포츠산업의 첨단화로 산업규모 확대-향후 5년간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 12.2, p.8.

## V. 결론

한국스포츠는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스포츠분야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선수폭력, 승부조작, 오심, 스카우트 및 입시비리, 체육단체 횡령, 불공정 계약 등 스포츠정신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위와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다만 공정한 스포츠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윤리적인 활동에만 치우치고 있다. 대한체육회(경기연맹, 시도체육회), 프로연맹 등 체육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포츠인권익센터, 클린스포츠 TF, 프로스포츠공정센터 등은 중복된 스포츠윤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분쟁을 줄일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분쟁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현행 스포츠분쟁해결제제도도 단체 내에서만 해결하도록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경기단체·시도체육회 상벌위 → 재심 →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로 가도록 되어 있고, 프로스포츠 역시 프로연맹 상벌위 → 재심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도 제재위 → 재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현행 분쟁해결기구의 특성상 선수, 심판, 지도자보다 경기단체나 구단에게 유리하거나 온정적, 미온적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사례처럼 독립기관의 재심을 통해 분쟁 해결의 윤리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상 화해나 최종 판결의 효과를 갖춘 중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분쟁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스포츠분야와 유사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는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분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은 계속되어야 한다(the show must go on)’는 것을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sup>50)</sup> 스포츠분야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절차의 비공개성, 저렴한 비용, 전문가의 의한 해결과 함께<sup>51)</sup>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50) 함영주, “미국엔터테인먼트산업과 조정·중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p.111; Toni L. Wotherly, “Note, 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Virgini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Winter 2002, p.169.

51) 스포츠분야에서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유사한 특성이 많아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제도가 적합하다.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중재 적합성에 관하여는 김상찬, “엔터테인먼트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3.2, pp.94-97; 최승수·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8., pp.49-72; 최승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활성화 방안”, 『중재』 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pp.14-17.

## 참고문헌

- 김상겸, “스포츠분쟁해결에 관한 헌법적 연구”, 『스포츠와 법』제5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4.
- \_\_\_\_\_, “스포츠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적 과제”, 『스포츠와 법』제13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 김상찬, “엔터테인먼트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 『중재연구』제23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3.
- 김성룡·안건형, “스포츠 분쟁해결에 있어 국내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제15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2.
- 노태강,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방안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및 경기운영시스템 인증제 시행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스포츠공정위원회 설립 및 경기운영시스템인증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에리사 의원실, 2013.
- 문화체육관광부, “IT를 접목한 스포츠산업의 첨단화로 산업규모 확대-향후 5년간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12.
- 양병희, “한국 스포츠분쟁 ADR의 현황과 전망”, 『스포츠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자료집』,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22회 학술대회, 2007.
- 연기영,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스포츠동지』, 2010.5.26.자
- 이재경, “스포츠분쟁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법률신문』, 2008.9.29.자
- 임동진, “행정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제47권 제3호, 2013. 가을호.
- 채우석, “스포츠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제12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 최승수·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9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3.
- 최승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중재활성화 방안”, 『중재』제326호, 대한상사중재원, 2008.
- 함영주, “미국엔터테인먼트산업과 조정·중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제4권 제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 Rules of the Sports Tribunal of New Zealand 2012, Part A - General Provisions.  
Sports Tribunal Annual Report 2012.

Toni L. Wotherly, “Note, 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Virginia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Journal*. Winter 2002.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홈페이지 (<http://www.cleansports.or.kr/index.do>)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ports-in.sports.or.kr/>)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sports.or.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체육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http://www.nest.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ada-ad.or.kr>)

한국야구위원회 2013 야구규약 (<http://www.koreabaseball.com>)

公益財團法人 日本スポーツ仲裁機構 홈페이지 (<http://www.jsaa.jp>)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adr.org>)

Sports Dispute Resolution Center of Canada 홈페이지 (<http://www.crdsc-sdrcc.ca>)

Sport Resolutions 홈페이지 (<http://www.sportresolutions.co.uk>)

Wikipedia 홈페이지 (<http://en.wikipedia.org>)

## ABSTRACT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Dae-Hee Kim

Currently disputes related to sports arise in various ways. Moreover, as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field of sports grows the chances of disputes occurring increases. Therefore, the number of sports disputes which will be dealt with by courts will increas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demands for fast and efficient legal resolutions for diverse sports disputes.

However,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current domestic arbitration for sports disputes exposed several problems: the lack of professional arbitrators for sports disputes, procedural elements of delay, and the lack of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Then this study will review of the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sports disputes and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arbitration system for the resolution of domestic sports disputes.

**Key Words** : Sports Dispute, Sports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rbitration